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16호 2019. 7. 15.(월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363호 하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3

훈 령

- 하동군 훈령 제352호 하동군 대형공사 주민감시관제도 운영 규정 폐지규정 5
- 하동군 규칙 제353호 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6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9-106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 14
- 하동군 고시 제2019-10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23
- 하동군 고시 제2019-108호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참여 고시 26
- 하동군 고시 제2019-110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이현*) 30
- 하동군 고시 제2019-111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오상*) 32
- 하동군 고시 제2019-11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지정변경 고시(고전면 고하지구) 35
- 하동군 고시 제2019-115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 고시(SK텔레콤) 38
- 하동군 고시 제2019-118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 고시(하동군수(산림녹지과)) 41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19-786호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43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9-772호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56
- 하동군 공고 제2019-775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개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57
- 하동군 공고 제2019-778호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59
- 하동군 공고 제2019-785호 화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85
- 하동군 공고 제2019-799호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7급상당)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113
- 하동군 공고 제2019-808호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기 지원사업(2차) 신청공고 115
- 하동군 공고 제2019-814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119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63 호

하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하동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

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대형공사 주민감시관제도 운영 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9년 7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훈령 제 352 호

하동군 대형공사 주민감시관제도 운영 규정 폐지규정

하동군 대형공사 주민감시관제도 운영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대형공사 주민감시관제도 운영 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9년 7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훈령 제 353 호

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현장면책 결정) ①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현장에서 감사자를 거쳐 감사부서 책임자에게 면책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 면책요청이 제5조에 따른 적극 행정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에서 면책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감사 대상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면책심사 신청 안내

하동군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본인
 -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 종료 이후 : 감사결과 처분 지시 이전까지(별지 제2호서식)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공 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현장면책 검토 요청 안내

감사대상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 「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판단 될 경우 현장면책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요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2. 요청기간

- 감사 종료일 10시 전까지(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타		

「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중

[별지 제2호의2 서식]

현장 적극행정면책 검토 신청서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감사 지적사항		
면책 심사 신청 사유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 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업무 책임자 의견		

※ 고의 또는 중과실 배제 추정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 심사조서

감 사 기 관 명		감 사 연 월 일	
건 명			
신 청 인	청		
심 사 대 상 자			
정 계 양 정 (안)			
비 위 내 용			
신 청 사 유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감 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총 합 의 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p><신 설></p>	<p>제5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p>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p>제10조의2(현장면책 결정) ① 감사</p>

대상기관은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현장에서 감사자를 거쳐 감사부서 책임자에게 면책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 면책요청이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에서 면책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감사대상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9-106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

제281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하 동 군 수

1. 결산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비고
합 계	719,781,924,547	717,814,767,985	618,739,400,104	99,075,367,881	
일반회계	591,078,545,337	587,788,153,362	498,246,190,828	89,541,962,534	
특별회계	128,703,379,210	130,026,614,623	120,493,209,276	9,533,405,347	

1-1. 세입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비율(%)	
						㉢/㉠	㉤/㉢
합 계	719,781,924,547	721,225,212,116	717,814,767,985	41,510,840	3,368,933,291	99.7	99.5
일반회계	591,078,545,337	591,173,840,653	587,788,153,362	41,510,840	3,344,176,451	99.4	99.4
특별회계	128,703,379,210	130,051,371,463	130,026,614,623	0	24,756,840	101.0	100.0

1-2. 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포함) ㉣=㉠-㉡-㉢	비율(%)		
					㉡/㉠	㉢/㉠	㉣/㉠
합 계	719,781,924,547	618,739,400,104	68,613,435,591	32,429,088,852	86.0	9.5	4.5
일반회계	591,078,545,337	498,246,190,828	65,911,770,951	26,920,583,558	84.3	11.2	4.6
특별회계	128,703,379,210	120,493,209,276	2,701,664,640	5,508,505,294	93.6	2.1	4.3

1-3. 결산상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합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반 납 금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99,075,367,881	39,416,968,128	27,491,451,680	0	3,996,489,007	28,170,459,066
일반회계	89,541,962,534	38,149,857,368	26,056,897,800	0	3,505,496,825	21,829,710,541
특별회계	9,533,405,347	1,267,110,760	1,434,553,880	0	490,992,182	6,340,748,525

2. 일반회계 결산

2-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비율(%)	
						㉢/㉠	㉢/㉡
합 계	591,078,545,337	591,173,840,653	587,788,153,362	41,510,840	3,344,176,451	99.4	99.4
지 방 세	19,951,000,000	22,375,040,010	20,693,828,540	23,766,620	1,657,444,850	103.7	92.5
지 방 세	19,951,000,000	22,375,040,010	20,693,828,540	23,766,620	1,657,444,850	103.7	92.5
세 외 수 입	24,640,423,000	29,476,521,075	27,772,045,254	17,744,220	1,686,731,601	112.7	94.2
경상적수입	7,287,665,000	7,368,642,028	7,195,163,928	0	173,478,100	98.7	97.6
임시적수입	17,352,758,000	22,107,879,047	20,576,881,326	17,744,220	1,513,253,501	118.6	93.1
지 방 교 부 세	218,100,750,000	220,875,426,650	220,875,426,650	0	0	101.3	100.0
조정교부금 등	26,043,000,000	25,540,241,000	25,540,241,000	0	0	98.1	100.0
보 조 금	155,665,753,000	149,088,869,650	149,088,869,650	0	0	95.8	100.0
국고보조금	121,514,507,000	115,698,248,000	115,698,248,000	0	0	95.2	100.0
도비보조금	34,151,246,000	33,390,621,650	33,390,621,650	0	0	97.8	100.0
지 방 채	8,000,000,000	8,000,000,000	8,000,000,000	0	0	100.0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8,677,619,337	135,817,742,268	135,817,742,268	0	0	97.9	100.0

2-2.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 행 잔 액 (보조금반납금 포함) ㉣=㉠-㉡-㉢	비율(%)		
					㉣/㉠	㉡/㉠	㉢/㉠
합 계	591,078,545,337	498,246,190,828	65,911,770,951	26,920,583,558	84.3	11.2	4.6
일반공공행정	19,509,809,740	16,730,830,620	504,483,210	2,274,495,910	85.8	2.6	11.7
공공질서및안전	20,640,295,050	15,069,005,895	5,043,811,271	527,477,884	73.0	24.4	2.6
교 육	3,792,288,000	3,524,710,820	0	267,577,180	92.9	0.0	7.1
문화및관광	43,837,747,950	33,085,018,241	9,938,958,700	813,771,009	75.5	22.7	1.9
환경보호	32,292,546,376	26,163,666,487	4,659,159,760	1,469,720,129	81.0	14.4	4.6
사회복지	89,603,486,970	84,594,150,497	1,436,175,780	3,573,160,693	94.4	1.6	4.0
보 건	12,679,584,000	10,542,249,775	750,767,000	1,386,567,225	83.1	5.9	10.9
농림해양수산	120,632,860,440	95,220,623,195	16,584,187,080	8,828,050,165	78.9	13.7	7.3
산업·중소기업	103,943,499,170	101,028,830,160	1,950,542,590	964,126,420	97.2	1.9	0.9
수송및교통	36,000,293,840	22,569,763,100	11,953,901,860	1,476,628,880	62.7	33.2	4.1
국토및지역개발	52,520,555,801	37,541,214,016	13,089,783,700	1,889,558,085	71.5	24.9	3.6
과학기술	805,392,000	176,424,717	0	628,967,283	21.9	0.0	78.1
예 비 비	1,666,500,000	0	0	1,666,500,000	0.0	0.0	100.0
기 타	53,153,686,000	51,999,703,305	0	1,153,982,695	97.8	0.0	2.2

3. 특별회계 결산

3-1.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비율(%)	
						㉤/㉠	㉤/㉡
합 계	128,703,379,210	130,051,371,463	130,026,614,623	0	24,756,840	101.0	100.0
상수도사업	10,735,417,240	11,181,300,775	11,156,543,935	0	24,756,840	103.9	99.8
의료급여기 금조성	727,381,000	761,154,661	761,154,661	0	0	104.6	100.0
저소득 주민생활	0	77,431,916	77,431,916	0	0	-	100.0
주민소득지 원자금	744,572,000	703,972,220	703,972,220	0	0	94.5	100.0
농공지구조 성사업	137,219,000	177,546,929	177,546,929	0	0	129.4	100.0
발전소 주변지역	6,193,415,000	6,669,076,491	6,669,076,491	0	0	107.7	100.0
중소기업육 성자금	4,383,600,000	4,419,765,996	4,419,765,996	0	0	100.8	100.0
농업재해복 구자금	1,290,169,000	1,282,308,845	1,282,308,845	0	0	99.4	100.0
수질개선기 금	12,176,052,970	12,510,512,952	12,510,512,952	0	0	102.7	100.0
산업단지조 성	89,531,052,000	89,446,979,840	89,446,979,840	0	0	99.9	100.0
자활기금운 영	2,784,501,000	2,821,320,838	2,821,320,838	0	0	101.3	100.0

3-2.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포함) ㉣	비율(%)		
					㉤/ ㉠	㉥/ ㉠	㉦/ ㉠
합 계	128,703,379,210	120,493,209,276	2,701,664,640	5,508,505,294	93.6	2.1	4.3
상수도사업	10,735,417,240	9,165,658,330	787,226,780	782,532,130	85.4	7.3	7.3
의료급여기금조성	727,381,000	709,220,841	0	18,160,159	97.5	0.0	2.5
주민소득지원자금	744,572,000	381,699,000	0	362,873,000	51.3	0.0	48.7
농공지구조성사업	137,219,000	85,080,430	0	52,138,570	62.0	0.0	38.0
발전소주변지역	6,193,415,000	4,447,174,992	0	1,746,240,008	71.8	0.0	28.2
중소기업육성기금	4,383,600,000	4,218,147,314	0	165,452,686	96.2	0.0	3.8
농업재해복구자금	1,290,169,000	1,280,169,000	0	10,000,000	99.2	0.0	0.8
수질개선기금사업	12,176,052,970	9,137,221,359	1,896,437,860	1,142,393,751	75.0	15.6	9.4
산업단지조성	89,531,052,000	88,978,838,010	18,000,000	534,213,990	99.4	0.0	0.6
자활기금운영	2,784,501,000	2,090,000,000	0	694,501,000	75.1	0.0	24.9

4.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14,708,502,588	△12,420,043,322	1,398,304,006	13,818,347,328	2,288,459,266
재난관리기금	1,378,762,260	538,622,440	1,161,239,980	622,617,540	1,917,384,700
식품진흥기금	65,410,420	744,731	29,904,731	29,160,000	66,155,151
자활기금	2,780,297,453	△2,780,297,453	4,203,815	2,784,501,268	0
옥외광고정비기금	4,540,800	△1,937,210	42,790	1,980,000	2,603,590
투자유치진흥기금	10,196,793,260	△10,196,793,260	260	10,196,793,52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110,766,695	△11,272,430	1,022,570	12,295,000	99,494,265
하동군체육기금	171,931,700	30,889,860	201,889,860	171,000,000	202,821,560

5. 채권 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3,973,855,649	872,492,440	1,525,339,210	3,321,008,879
일반회계	2,310,283,200	386,170,000	824,409,090	1,872,044,110
특별회계	1,663,572,449	486,322,440	700,930,120	1,448,964,769
저소득주민생활	366,827,122	18,882,880	52,900,160	332,809,842
주민소득지원자금	380,777,330	15,446,060	48,071,960	348,151,430
발전소주변지역	915,967,997	451,993,500	599,958,000	768,003,497

6. 채무 결산

6-1. 채무

(단위 : 원)

회 계 별	종 류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0	10,000,000,000	0	10,000,000,000
일반회계	지방채무 (차입금)	0	8,000,000,000	0	8,000,000,000
특별회계	지방채무 (차입금)	0	2,000,000,000	0	2,000,000,000
상수도사업	지방채무 (차입금)	0	2,000,000,000	0	2,000,000,000

6-2. 보증채무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7. 공유재산 결산

(단위 : 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156,399	654,636,156,709	1,137	21,128,487,612	200	5,097,641,368	157,336
행정재산	155,385	646,993,253,404	1,134	21,096,506,672	143	3,763,152,713	156,376	664,326,607,363
일반재산	1,014	7,642,903,305	3	31,980,940	57	1,334,488,655	960	6,340,395,590

8. 물품 결산

(단위 : 원)

구 분	정수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615	588	6,318,084,501	54	590,308,790	52	131,716,000	590	6,776,677,291
업무용	615	588	6,318,084,501	54	590,308,790	52	131,716,000	590	6,776,677,291

9. 재무제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당해연도	1,992,726	26,415	1,966,311	451,803	469,531	17,727
전년도말	1,997,443	93,148	1,904,295	443,878	451,473	7,595
증감	△4,717	△66,733	62,016	7,925	18,058	10,132

하동군 고시 제2019 - 109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28.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665-23 외 15필지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6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 동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56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665-23	2019 0628		2009 0702	정기룡장군 추모사당을 지나가는 도로로 지역의 역사성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998-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116	2019 0628		2009 0702	삼신봉과 산청군과 연결되는 삼신봉터널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법대리 산65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옥수로 127	2019 0628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중+ 수곡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법대리 306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옥수로 52-15	2019 0628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중+ 수곡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병천리 512-2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덕천로 102-39	2019 0628		2007 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506-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180-1	2019 0628		2007 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서쪽에 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155-5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386	2019 0628		2007 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두양리 71-2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옥단로 1757	2019 0628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중+ 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337-3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배안골길 51-134	2019 0628		2007 0618	산 허리의 바위들의 배치가 배의 내부와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1341-3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사동길 9	2019 0628		2007 0618	사동이라는 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434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사평길 54	2019 0628		2007 0618	모랫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중대리 657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상중대1길 12-35	2019 0628		2009 0302	중대리 윗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 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50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길 23-57	2019 0628		2007 0618	산등성이에 용이 산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636-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43-25	2019 0628		2007 0618	선돌이 있어 입석이 되어 버린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 양면 입석리 636-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43-27	2019 0628		2007 0618	선돌이 있어 입석이 되어 버린 법정리명을 도로명 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 중면 법대리 179-4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멧골길 11-5	2019 0628		2019 0627	예부터 불리던 멧골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고시 제2019 - 108호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참여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2항 규정에 따라, 국가시설인 화력 발전소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 회에서 현안문제 공동대처 및 발전을 도모코자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 치단체 행정협의회」에 하동군이 참여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하 동 군 수

붙임 :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1부.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제1조(명칭) 본회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국가시설인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화력발전소와 관계된 지역발전 방안
3.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관련 각종 현안 및 민원사항 해결
5. 제도·정책 등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 공동건의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옹진군, 보령시, 태안군,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하동군으로 하며, 협의회의 위원은 옹진군수, 보령시장, 태안군수, 동해시장, 삼척시장, 고성군수, 하동군수로 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옹진군수, 보령시장, 태안군수, 동해시장, 삼척시장, 고성군수, 하동군수 순으로 2년에 한번 씩 윤번제로 하며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소속기관의 부시장·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발전소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운영의 기록관리 등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제5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각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협의회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 마다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④ 협의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회의 개최 후에는 해당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⑦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각 자치단체에 송부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6조(회의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 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안건을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자치 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위원) 협의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각 자치단체의 발전소 업무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참석자 의 범위는 협의회의 간사가 사전에 논의하여 결정한다.

③ 실무협의 회의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공통경비) ① 각 회원 자치단체에서 매년 10,000천원씩 부담하여 공 통경비로 관리한다.

②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등의 실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공통경비를 사용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의 수당은 공통경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④ 공통경비의 지출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간사가 지출하고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결산결과를 연 1회 보고한다.

제11조(규약의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연장 허가 공고

공고 제2019 - 110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명)	이 현 *	주소	하동군 옥중면 신기동길
소하천명		산태골천		
공사(점용·사용)개요	위치	옥중면 두양리 1073-127(천) (*인근: 두양리 453-3(대))		
	면적	35㎡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35㎡
	기간	2019. 7. 1. ~ 2023. 7. 1.		
	목적 및 사유	농가주택 건립에 따른 진,출입로(현황유지사용 점용신청)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제활용품)]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대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9-111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오 상 *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김해시 활천로	

장소

점용 :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849(구) 인근 :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719(답)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46㎡

(또는 m³)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9.7.1. ~ 2023.7.1.

점용·사용의 유형

진출입로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인)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9 - 11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지정변경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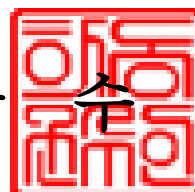
- 아 래 -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변경 사유	비고
		구분	유형	등급	면적 (m ²)		
고하 지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701번지 일원	당초	침수 위험 지구	가	40,200	-외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 및 소하천유역의 홍수량 가중 등 복합적인 위험성이 있으며, 소하천유역의 홍수량을 주교천으로 직접 방류하기위해 소하천정비 및 저류지 설치가 필요함 -소하천정비구간 등을 추가하여 지구지정면적 변경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의견을 반영	
		변경	침수 위험 지구	가	80,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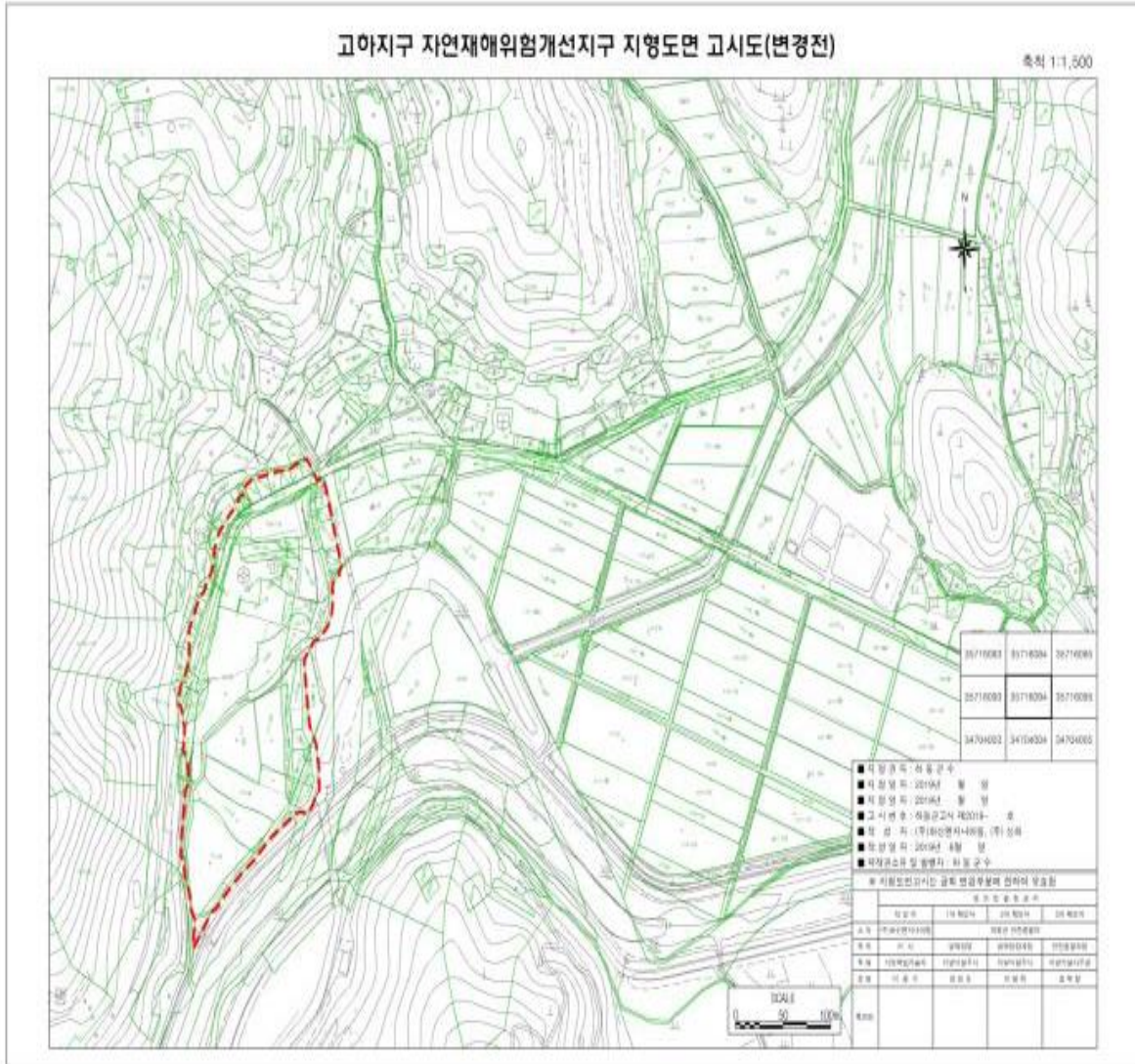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도면 1부.

2019. 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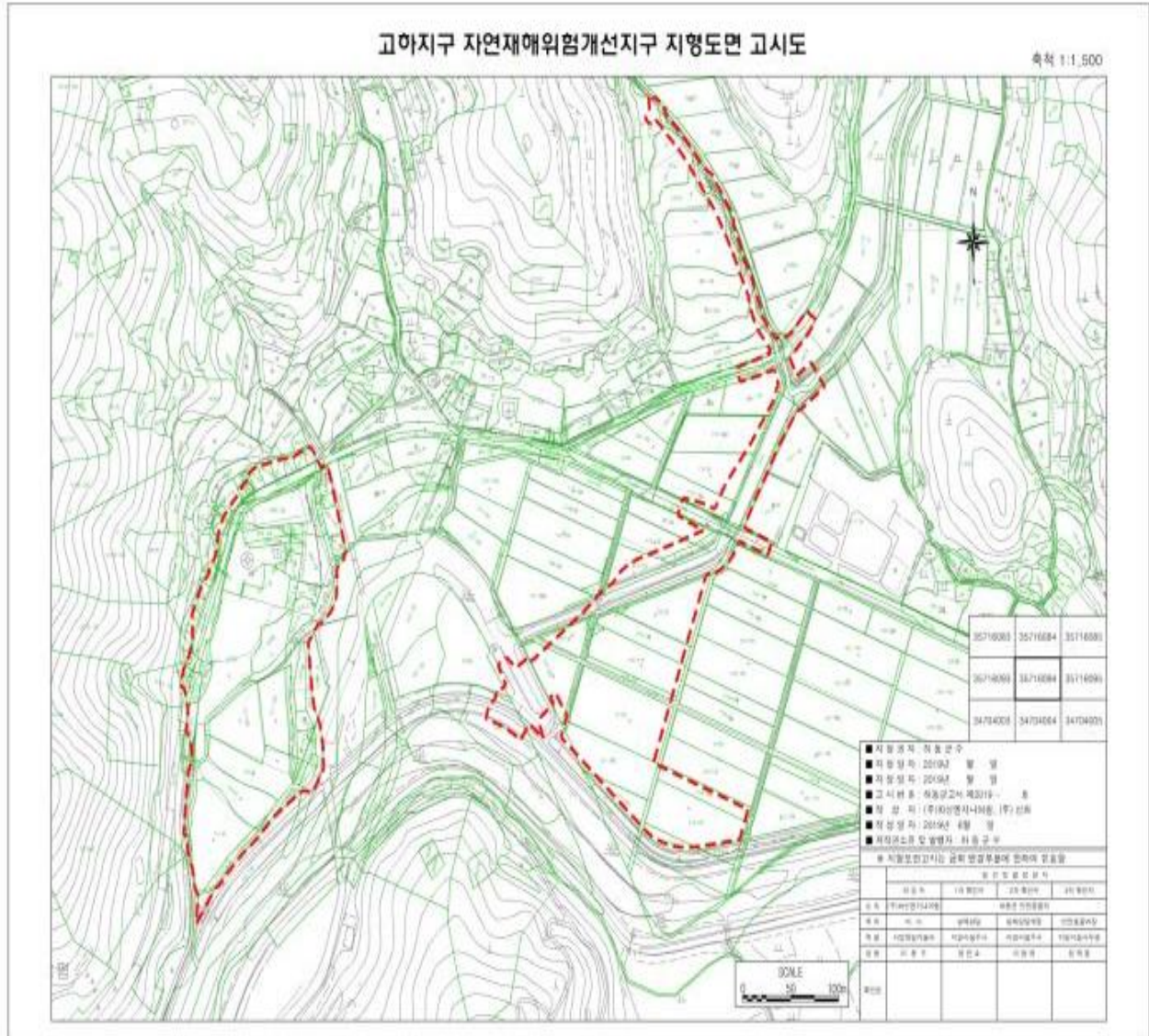
하 동 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변경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변경후)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9-115호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58 SK텔레콤 부산지사		
성명(법인명)	에스케이텔레콤(주)		
법 인 번 호	104-81-37225 (110111-0371346)		
하 천 명 칭	북방천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794-22번지(답)		
점 용 면 적	1.0㎡		
최 초 허 가 일	2019년 6월 1일		
점 용 기 간	2024년 6월 1일		
허 가 조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제출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하고, 허가시설물외 다른 시설물이 추가설치 되거나 우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만료 1개월 전까지 하천점용 연장 허가신청 하여야 합니다.)

2. 본 점용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피허가자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피 허 가자 본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점용 및 공작물 설치로 편입되는 하천구역내의 사유 토지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또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4.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하천법에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협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않되** 며, 민원발생시 점용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접지역이 하천임을 감안하여 오폐수 유입방지를 위해 점 용지 유 지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등 국가 및 공익상의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당해 필지의 공작물(건물, 기타 축조물)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 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8. 제방 인접 공작물 설치 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하천법 95조에 의거 하천 점용 허가 취소 및 고발 조치 함을 알려드립니다.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3.3.23>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9- 118호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23		
성명(법인명)	하동군수(산림복지과)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614-83-00025		
하 천 명 칭	횡천강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1019-1 천 600㎡ (*인근 : 횡천면 횡천리 1070(도))		
점 용 면 적	600㎡		
최초허가일	2019. 7. 8.		
점 용 기 간	2019년 7월 16일 ~ 2019년 7월 20일 (5일간)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5 의거)		
허 가 조 건	별도 불임과 같음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7월 8일			
하동군수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동군 공고 제 2019 - 786호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2. 제안 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5조)

○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

나. 퇴직자의 사적 접촉의 신고(안 제5조의6)

○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퇴직자와의 행위 구체화

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9조의3)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인사 부정청탁 금지 조항 신설

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13조의3)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조항 신설
- 마.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안 제14조의2)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 신설 및 부당요구 사항 구체화
- 바.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안 제16조)
- 직무관련자 거래신고시 서면신고 추가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7월 25일까지 하동군(기획예산과 ☎ 880-2032, FAX 880-201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군수가 정하는 일정”을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제5조제1항제7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5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자
- 8.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 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9. 학연, 지연, 종교, 지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10.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5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후원인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의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행위

제5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단,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2의 제목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를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

의 요구

제14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무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군수가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5. (생 략)</p> <p>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u>군수가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p> <p>-----</p> <p>- <u>다음 각 목의</u></p> <p>-----</p> <p>-----</p> <p>-----</p> <p>-----</p> <p>-----</p> <p>가. <u>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u></p> <p>나. <u>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u></p> <p>다. <u>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u></p>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7. (생 략)

② ~ ⑦ (생 략)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사전에 별 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퇴직자와 사적

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7. 5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자

8.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9. 학연, 지연, 종교, 지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11.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후원인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의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단,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

<신 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19 - 772호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한 어장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 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품종	어 장 위 치	면 적 (ha)	면허일자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 고
하동양식 제48호	어류 등 양식어업	가두리식	어류 등	금남면 대치리 지 선	0.5	2019.06.26	2019.06.29 2023.04.10	김 * 근	하동양식 제39호 대체개발

□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시설물은 본인 부담으로 철거 하여야함.

하동군 공고 제2019-775호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공 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019. 7. 2.

하 동 군 수

1. 공공하수도 현황

○ 기본현황

처리장명	위 치	시설용량 (m ³ /일)	처리방식	처리구역 (ha)	배제방식	사용개시일
개치 소규모공공 하수처리시설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산90-5	60	JSBR 공법	12	분류식	2019.7.2.

○ 방류수질

처리장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개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적 수 질	10.0	40.0	10.0	40.0	4.0	3,000이하
	설 계 수 질	4.2	10.0	4.0	9.0	0.8	30
	방 류 수 질	1.9	2.4	1.9	1.12	0.181	0

○ 방류수계

처리장명	방 류 수 계
개치 소규모공공 하수처리시설	처리장 → 섬진강하류

2. 사용개시(공고)일

- 2019. 7. 2.

3. 기타

-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발생(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하수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하동군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하수처리구역 열람(현황 및 도면)과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청 수도사업과 하수도 담당(☎880-02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2019 - 778호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2. 제안 이유 : 국가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
3. 주요 내용 :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
4. 의견 제출 : 이 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7월 24일까지 하동군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전화 055-880-2124, FAX 055-880-7879, e-mail yjun0522@korea.kr)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 임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별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정명 :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훈령 제 호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토교통부 예규인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하동군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하동군 본청과 직속기관·읍·면사무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

제3조(보안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간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기관에서 보유한 중요 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 지도·점검·감사·교육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1. 본청 : 민원과장
- 2. 소속기관 : 공간정보업무 부서의 장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인 경우에는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
- 2.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 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감사 및 교육
- 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
- 5.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 6.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본청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하동군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 제9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세부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 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 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대책

5.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보안심사위원회가 대행하며,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 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의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업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

제9조(공간정보의 분류 등)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세부분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이하 “공개제한”이라 한다)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② 공간정보를 분류할 때에는 세부 속성(칼럼)별로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 중 하나로 분류하고 최고의 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비공개 공간정보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중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대통령 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 1. 보관책임자 정 : 소관부서의 장
- 2. 보관책임자 부 :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자

제1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소관부서의 장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
-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 3. 공간정보 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접근 권한 구분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 권한 제한

나. 작업 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 내용에 따라 기본 항목·전 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 관리 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이용

4.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자료목록 작성관리(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
 5. 해킹 등 불법 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
- ②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제12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간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 유통망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소관 부서의 장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운영
3.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4.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5. 공간정보 유통망은 월 1회 이상 점검·확인

제13조(공간정보의 복제·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관리하는 경우

- 2. 비공개 공간정보는 군수의 허가를 받은 때
- 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출력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 ③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출력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제14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 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 5. 비인가 카메라·휴대폰·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 6.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계약서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 등의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 4. 용역종료 시 성과물 및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 5. 그 밖에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간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군수는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신원 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
- 2. 계약서에 기밀누설·유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

② 군수는 제1항의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위험하고 유해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 ① 군수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절차·시행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제1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 또는 기관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 1.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신원사항

- 2. 소속기관·단체 및 직책
-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 4. 활용 후 관리대책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군수는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 군수는 미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군수는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제6장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보안사고 조치 등

제22조(보안지도) ① 군수는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지사에게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소속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 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
- 3. 공간정보의 유출·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
- 4. 그 밖에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③ 군수는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보안점검 및 감사) ① 군수는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 보안점검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안감사를 위해 보안담당관 등 공간정보 보안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공간정보 보안전문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감사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25조(보안사고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도지사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무단 이용
3. 법 제38조의 비밀의 누설·도용
4. 공간정보 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가정보원장의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안사고에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보안관리규정)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자구수정, 기관(부서)명칭 변경 또는 국가정보원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사항 등에 의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2.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3.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4.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5. 연도별 「보안업무 수행지침」
6. 그 밖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제9조 관련)

공간정보	등 급	분류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 자료
	공 개 제 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 자료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u>25cm</u> 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 제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u>25cm</u> 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 개 제 한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4m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전자지도	비공개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 개 제 한	○군사지도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지하시설물도(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p>○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상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 - 가스관 : 지상가스관 - 송유관 : 지상송유관, 저장소 - 기타관 : 기타 수송관 - 맨 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을 말한다) -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p>※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 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p> <p>○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p>
	공 개	<p>○“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p> <p>○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p>
해양 공간정보	비공개	<p>○접경해역 수심 자료</p> <p>○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 자료</p>
	공개 제한	<p>○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p> <p>※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p> <p>○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 자료</p>
	공 개	<p>○“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p> <p>○“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 자료</p> <p>○해도, 전자해도 등</p>
기 타 공간정보	비공개	<p>○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도로명주소 기본도 <p>○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 자료</p>
	공 개 제 한	<p>○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 자료</p> <p>○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p> <p>※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p>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 개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 자료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 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도로명 주소 안내도



※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공간정보의 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제18조 관련)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하동군이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하동군이 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 라. 기타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4.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 중일 때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3항의 상황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의 반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반출조치

(가) 공간정보 등 반출요원 소집 및 반출지시

반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반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따라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 포함)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반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과의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숙직자(수위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과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받은 해당 과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지리 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소집 되어 도착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반출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 반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반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 정보 등의 안전 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반출절차 제4항 가, 나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제9조 및 제11조 관련)

				기	구	관	기	
				시	도	구	도	
				관	리	기	관	
				관	리	부	관	
				정	명		관리담당자	
				연	락	처		이
				일				
				부	록	작	정	
				일				
				시	스	테	레이어	
				명	칭			명
				한	글		영	
				만				명
				정	보	의	정보의	
				주	요	내		주요내용
				용			(레이어	
				설	명)			설명)
				구	축	범	구	
				위				축
				데	이	터	데이터	
				구	축	태		구
				형	태		축	
				우	형			데이터
				레	스	터	우	
				터				형
				최	초	생	최초	
				성	일	자		생
				일			성	
				경	신	주		경신
				기			주	
				최	종	경		최종
				신	일	자	경	
				일				신
				공	개	구	공	
				분		분		개
				비			비용	
				구				비
				분				
				금			금	
				액				액
				정				
				수			수	
				근				근
				거				
				제			제	
				공				공
				신			신	
				전				전
				건			건	
				비				비
				개			개	
				공				공
				개			개	
				제한				제한
				근			근	
				거				거
				비			비	
				고				고

[별지 제2호 서식]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제11조 관련)

관리 번호	제작일자	제 목	형 태	수량 (건)	보호 기간	보관 장소	비고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공간정보 제공(복제·출력) 관리대장(제13조·제19조·제20조 관련)

일자	공간정보	자료 구분	건수 (매수)	출력자 (복제자)	제공사유	열람·수령자		예고문	승인관
						소속	성명		

※ 자료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으로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제19조 관련)

신 청 인 (신청기관) 신원사항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기관(단체)		직 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제 공 내 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	반납여부	반납일
	보안대책			

본인은 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산출물 등은 제공기관 환수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 공고 제2019 - 785호

화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화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변경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4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화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나. 위 치 : 하동군 화개면 탑리, 범왕리 지내
- 다. 사 업 량 : 축제정비 L=3,390m (호안공 A=25,226㎡), 교량 2개소, 가동보 1개소, 배수암거 3개소, 배수통관 7개소
- 라. 사업기간 : 2019년 7월 ~ 2022년 7월
- 마.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 붙임 편입조서 참조

3. 토지·물건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9년 7월 4일 ~ 2019년 7월 19일(16일간)
-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및 하동군 홈페이지
- 다. 이의신청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055-880-2532~4)
- 라. 이의신청 방법 : 서면 신청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9년 8월 이후

나. 보상금의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다. 보상방법 : 협의 성립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압류 및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현금(계좌) 지급

5. 기 타

가.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참고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법에 따라 분할 예정이며 예상편입면적과 확정면적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및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 토지 및 물건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055-880-2532~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지 및 지장물조사서

2019. 3



경 상 남 도

편입토지 토지조서

편입토지 집계표

화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단위 : m²

소유권	합		국유지		사유지		비고						
	필지	포락	필지	비포락	필지	비포락							
계			192	61,815			97	47,161			95	14,654	
답			83	16,575			32	6,361			51	10,214	
전			6	607			2	21			4	586	
대			12	1,697			1	695			11	1,002	
임			5	659			1	54			4	605	
잡			2	198			1	116			1	82	
천			22	31,593			16	30,580			6	1,013	
구			10	1,813			10	1,813					
도			44	6,282			28	5,201			16	1,081	
창													
제			3	908			3	908					
장			1	9							1	9	
유													
과													
철													
학													
차			4	1,474			3	1,412			1	62	

화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현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하동	화개	탐	863-1	구	2,495	470		국토교통부	국			
2	하동	화개	탐	634-1	대	410	2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탐리 634-1	정종길		근저당권 자(화개동 농업협 조합)	
3	하동	화개	탐	633	답	119	119		경상남도	국			
4	하동	화개	탐	634-10	대	330	1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7	문희선		근저당권 자(구례동 농업협 조합)	
5	하동	화개	탐	632-1	답	709	709		하동군	국			
6	하동	화개	탐	632	답	802	664		하동군	국			
7	하동	화개	탐	631	차	1,903	618		하동군	국			
8	하동	화개	탐	631-1	답	553	553		하동군	국			
9	하동	화개	탐	630	차	2,169	134		하동군	국			
10	하동	화개	탐	628	차	1,406	660		하동군	국			
11	하동	화개	탐	628-1	답	706	706		하동군	국			
12	하동	화개	탐	867	도	2,469	45		국토교통부	국			
13	하동	화개	탐	582	답	678	93		하동군	국			
14	하동	화개	탐	582-1	답	287	287		하동군	국			
15	하동	화개	탐	581-1	답	524	107		하동군	국			
16	하동	화개	탐	581-3	답	220	220		하동군	국			
17	하동	화개	탐	577-5	답	1,688	500		하동군	국			
18	하동	화개	탐	577-2	제	584	584		하동군	국			
19	하동	화개	탐	577-4	답	1,458	185		하동군	국			
20	하동	화개	탐	578	답	196	144		하동군	국			
21	하동	화개	탐	578-1	제	211	211		하동군	국			
22	하동	화개	탐	577-3	답	330	70		하동군	국			
23	하동	화개	탐	577-1	제	113	113		하동군	국			
24	하동	화개	탐	577	답	660	107		하동군	국			

25	하동	화개	탐	851	천	190,04 ₃	8,44 ₉		국토교통부	국			
26	하동	화개	탐	573	답	1,574	18		하동군	국			
27	하동	화개	탐	572	답	998	243		하동군	국			
28	하동	화개	탐	572 -1	답	506	340		하동군	국			
29	하동	화개	탐	552	답	1,501	18		하동군	국			
30	하동	화개	탐	571 -8	임	316	54		하동군	국			
31	하동	화개	탐	571 -6	답	50	2		경상남도	국			
32	하동	화개	탐	863	잡	1,365	116		하동군	국			
33	하동	화개	삼신	705 -1	답	836	5		경상남도	국			
34	하동	화개	삼신	990	구	24,033	500		국토교통부	국			
35	하동	화개	삼신	702 -1	답	370	363		경상남도	국			
36	하동	화개	삼신	702	답	1,174	77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법하길 16	임미순			
37	하동	화개	삼신	701	답	119	119		경상남도	국			
38	하동	화개	삼신	700 -4	답	20	20		경상남도	국			
39	하동	화개	삼신	700 -2	답	1,355	41		627	최장례			
40	하동	화개	삼신	700 -3	답	44	44		경상남도	국			
41	하동	화개	삼신	700 -1	답	1,272	99		890	박종욱			근저당 권자(농 어촌진 흥공사)
42	하동	화개	삼신	689	답	1,874	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서동길 5-12	김수길			
43	하동	화개	삼신	688	답	2,063	51		890	박종욱			근저당 권자(농 어촌진 흥공사)
44	하동	화개	삼신	687	답	1,626	156		화개면 삼신리 890	박종욱			
45	하동	화개	삼신	994	도	1,851	1,75 ₆		국토교통부	국			
46	하동	화개	삼신	685	답	3,372	650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207번길 14-3 (상대동)	김지애			
47	하동	화개	삼신	684	답	688	120		탐리 106	이강길			

48	하동	화개	삼신	683	답	1,633	741		탐리 357-5	이강길			
49	하동	화개	삼신	681	답	4,248	401		탐리 108	주기형			
50	하동	화개	삼신	682	구	99	99		국토교통부	국			
51	하동	화개	삼신	680 -2	답	3,653	550		탐리 708	유재우			
52	하동	화개	삼신	680 -1	대	549	516		탐리 708	유재우			
53	하동	화개	삼신	100 5	천	162,99 8	3,23 5		국토교통부	국			
54	하동	화개	삼신	676	답	916	214		620	주명돈			
55	하동	화개	삼신	675	대	149	149		탐리 232	유재영			
56	하동	화개	삼신	528	답	1,081	102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319	이종팔			
57	하동	화개	삼신	528 -1	답	364	11		하동군	국			
58	하동	화개	삼신	992	도	2,383	9		국토교통부	국			
59	하동	화개	정금	138 4	구	1,489	73		국토교통부	국			
60	하동	화개	정금	137 4	천	96,446	1,53 0		국토교통부	국			
61	하동	화개	정금	954	답	60	35		258-1	이갑수			
62	하동	화개	정금	955	답	264	215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46 후곡마을 206동 906호	최석산			
63	하동	화개	정금	956	답	1,808	238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46 후곡마을 206동 906호	최석산			
64	하동	화개	정금	957	답	357	1		삼신리 258-1	노승자			
65	하동	화개	정금	971	답	902	71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길 9-2	이갑수			
66	하동	화개	정금	970	답	926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367번길 37, 7동 202호(하 단동,대진 연립)	문옥진			

67	하동	화개	정금	138 5	구	327	116		국토교통부	국			
68	하동	화개	정금	970 -3	답	691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367번길 37, 7동 202호(하 단동,대진 연립)	문옥진			
69	하동	화개	정금	970 -5	답	246	26		경상남도	국			
70	하동	화개	정금	973	전	327	7		경상남도	국			
71	하동	화개	정금	104 0-1	답	131	85		하동군	국			
72	하동	화개	정금	135 0	천	21,068	10		국토교통부	국			
73	하동	화개	정금	104 0	답	147	139		하동군	국			
74	하동	화개	정금	104 1	답	119	43		하동군	국			
75	하동	화개	정금	109 8	답	869	373		하동군	국			
76	하동	화개	정금	109 9	답	517	494		1167	정순금			
77	하동	화개	정금	109 9-1	답	22	22		1167	정순금			
78	하동	화개	정금	137 9	구	2,621	79		국토교통부	국			
79	하동	화개	정금	110 0-2	답	208	208		삼신리 282	이상기			
80	하동	화개	정금	110 0-1	답	364	364		삼신리 282	이상기			
81	하동	화개	정금	110 1	답	1,608	1,08 2		삼신리 282	이상기			
82	하동	화개	정금	137 4	천	96,446	4,88 9		국토교통부	국			
83	하동	화개	정금	110 2	답	1,226	4		1167	정순금			
84	하동	화개	정금	110 3	답	615	29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564 태원아파트 107동 1808호	유경석			
85	하동	화개	정금	110 1-1	답	12	12		하동군	국			
86	하동	화개	정금	110 5	답	1,161	9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35-13, 201동 1003호 (당감동, 태화현대아 파트)	이승민		근저당 권자(화 개농업 조합)	

87	하동	화개	정금	110 7-6	천	51	51		경상남도	국			
88	하동	화개	정금	110 7-4	천	665	421		하동군 화개면리 1168	이선자			
89	하동	화개	정금	110 6-1	천	20	20			김동윤			등기부등본없음
90	하동	화개	정금	110 6	천	36	36			김동윤			등기부등본없음
91	하동	화개	정금	110 7-7	대	249	4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로 30, 113동 2702호(양 덕동, 메트로시티)	박현기		근저당권 자, 지상권자 (화개농 업협동조 합)	
92	하동	화개	정금	110 7-5	천	52	52		경상남도	국			
93	하동	화개	정금	138 1	도	340	304		국토교통부	국			
94	하동	화개	정금	118 8-2	답	36	36		경상남도	국			
95	하동	화개	정금	118 8-1	대	514	70		1047	최선애		근저당권 자, 지상권자 (화개농 업협동조 합)	
96	하동	화개	삼신	133	답	1,165	186		전라남도 광양시 진동6길 51, 606동 2104호 (마동, 송보파인빌 6차아파트)	방범중			
97	하동	화개	삼신	134	답	754	2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차시배지길 3	방천일			
98	하동	화개	삼신	976	도	896	35		국토교통부	국			
99	하동	화개	삼신	100 5	천	162,99 8	978		국토교통부	국			
100	하동	화개	정금	118 8	대	169	2		경상남도 창원시 충양동	배재형			

									62-11				
101	하동	호개	정금	136 3	구	1,831	2		국토교통부	국			
102	하동	화개	삼신	산1 7-1	도	397	7		운수리 553	김학두			등기부등본없음
103	하동	화개	삼신	61- 4	도	192	5			김노세			등기부등본없음
104	하동	화개	삼신	61- 2	도	145	3			김노세			등기부등본없음
105	하동	화개	삼신	100 5	천	162,99 8	6,84 8		국토교통부	국			
106	하동	화개	삼신	60- 5	답	1,111	3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351	이종수		근저당권 자, 지상권자 (화개농 업협동조 합)	
107	하동	화개	삼신	60- 6	전	1,079	30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987-1	오형두		근저당권 자, 지상권자 (하동농 업협동조 합)	
108	하동	화개	삼신	966	도	757	230		국토교통부	국			
109	하동	화개	삼신	60- 1	전	990	58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451 사천푸르지 오 109-604	오정두			
110	하동	화개	삼신	57- 1	전	14	14		경상남도	국			
111	하동	화개	삼신	57	전	171	65		5	박희연			
112	하동	화개	운수	897	천	105,51 4	1,41 8		국토교통부	국			
113	하동	화개	삼신	54- 1	답	1,227	248		용강리 446	이종만		근저당 권자, 지상권 자(화개 농업협 동조합)	
114	하동	화개	삼	55-	대	380	6		용강리	양해진			

			신	6					458-4				
115	하동	화개	삼신	55-3	대	1,120	2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길 31	양해진			
116	하동	화개	운주	664	대	16,949	695		하동군	국			
117	하동	화개	운주	655	천	2,159	26		하동군	국			
118	하동	화개	운주	897	천	105,514	37		국토교통부	국			
119	하동	화개	용강	산93-1	도	50	31		화개면 운수리 208	대한불교 조계종 쌍계사			
120	하동	화개	용강	산93-2	임	3,273	342		화개면 운수리 208	대한불교 조계종 쌍계사			
121	하동	화개	용강	1325	천	178,423	2,239		국토교통부	국			
122	하동	화개	용강	산90	임	1,884	44		전남 구례군 구례읍 토지내서리	임정규			등기부등본없음
123	하동	화개	용강	211-2	도	179	179		전남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510	김종필			
124	하동	화개	용강	211-4	답	69	69		군포시 당동 782-11 덕은빌라 에이-302	김종식			
125	하동	화개	용강	211-3	도	102	102		450	이면구			
126	하동	화개	용강	202-1	답	425	14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15	배재현 외 2인		근저당 권자(하 동신동 조합)	
127	하동	화개	용강	209-2	답	103	103		경기 연천군 연곡읍 은대리 649-9 진군아파트 7동 502호	배재영			
128	하동	화개	용강	210-1	천	26	26		전남 여수군 두남면 대표리	박성협			등기부등본없음
129	하동	화개	용강	210-2	도	73	73		전남 여수군	박성협			등기

									두남면 대표리				부 등 보 인 수 액
130	하동	화개	용강	208-2	도	86	86		운수리 289	김용팔			
131	하동	화개	용강	208-1	답	170	170		경기 연천군 천곡읍 은대리 649-9 진군아파트 7동 502호	배재영			
132	하동	화개	용강	209-1	도	116	116		경상남도	국			
133	하동	화개	용강	209-3	도	6	6		국토교통부	국			
134	하동	화개	용강	207-2	도	30	30		251	이성조			
135	하동	화개	용강	207-1	답	393	314		화개면 용강리 217	김상석 외 2인			
136	하동	화개	용강	134 2	도	767	534		건설부	국			
137	하동	화개	용강	202-3	답	23	2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471-6	배재근			
138	하동	화개	용강	134 0	구	1,117	220		국토교통부	국			
139	하동	화개	용강	202-2	도	433	297		경상남도	국			
140	하동	화개	용강	206	답	466	32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481-16	최윤철		근저당권 자(화개 농업협동 조합)	
141	하동	화개	용강	205	답	426	21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685-2	정춘애			
142	하동	화개	용강	204	천	145	74		양산군 기장면 대라리 312	박병규			
143	하동	화개	용강	203	답	1,203	549		진주시 망경동 439-15 이화아파트 나동 603호	배현주 외 1인			
144	하동	화개	용강	200	답	919	40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15	배재현		근저당 권자. 지상권 자(하동 신용협 동조합)	

145	하동	화개	용강	200-1	답	179	8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15	배재현			
146	하동	화개	용강	199	답	387	251	진주시 상봉동 1102-1 현대로알맨 션 109호	배중현			
147	하동	화개	용강	198	천	469	436	312-1	최성자 외 1인			
148	하동	화개	용강	201-1	답	679	119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211동 1202호 (중동,성호 아파트)	강종인			
149	하동	화개	용강	197	답	89	7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271	정춘순			
150	하동	화개	용강	134 1	구	1,488	104	국토교통부	국			
151	하동	화개	용강	196-1	답	1,479	28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79-11	이종기			
152	하동	화개	운주	688	답	1,002	1	166	김갑덕			
153	하동	화개	운주	688-1	도	201	10	하동군	국			
154	하동	화개	운주	687-1	도	474	436	하동군	국			
155	하동	화개	운주	876	천	8,165	2	국토교통부	국			
156	하동	화개	운주	687	대	1,106	121	456	김태곤			
157	하동	화개	운주	897	천	105,514	337	국토교통부	국			
158	하동	화개	운주	687-2	차	364	6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456	김종인			
159	하동	화개	범왕	1897	천	68,185	479	국토교통부	국			
160	하동	화개	범왕	105-1	장	322	9	경상남도 거제시 삼거4길 22 (삼거동)	손경식			근저당권 자(화개 농업협동 조합)
161	하동	화개	범왕	105-2	대	922	2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946-18	정연우			근저당권 자, 지상권자 (동광양 농업협동 조합)
162	하동	화개	범	105	답	305	1	전라남도	정신화			근저당권

			왕	-3					광양시 폭포사랑길 96, 18동201호 (금호동,장 미아파트)		자, 지상권자 (동광양동 농업협동 조합)	
163	하동	화개	범왕	103 -5	답	640	3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5길 43-7, 105동 1402호(동 산동, 골드클래스)	정영훈 외 1인	근저당권 자(화개동 농업협동 조합)	
164	하동	화개	범왕	102 -3	잡	725	8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5길 43-7, 105동 1402호(동 산동, 골드클래스)	정영훈 외 1인	근저당권 자(화개동 농업협동 조합)	
165	하동	화개	탐	626 -3	도	10	1		국토교통부	국		
166	하동	화개	탐	616 -2	도	403	123		국토교통부	국		
167	하동	화개	탐	626 -2	도	7	7		국토교통부	국		
168	하동	화개	탐	625 -3	도	888	72		하동군	국		
169	하동	화개	탐	868	구	2,083	150		국토교통부	국		
170	하동	화개	탐	616 -1	도	10	8		서울 강서구 화곡동 430-19	강대현		
171	하동	화개	탐	산1 16- 3	도	427	113		하동군	국		
172	하동	화개	탐	산1 16- 2	도	99	29			정찬민		등기부등본없음
173	하동	화개	탐	587 -4	도	10	3		국토교통부	국		
174	하동	화개	탐	산1 15- 3	도	329	89		하동군	국		
175	하동	화개	탐	산1 15- 1	임	99	78			최한기		등기부등본없음

176	하동	화개	탐	산1 13- 9	도	131	28		하동군	국			
177	하동	화개	탐	산1 13- 7	도	99	21		삼신리	김정두			등기부등본없음
178	하동	화개	탐	587 -2	도	450	312		국토교통부	국			
179	하동	화개	탐	587 -5	도	140	65		하동군	국			
180	하동	화개	탐	산1 13- 6	도	99	75		삼신리	김정두			등기부등본없음
181	하동	화개	탐	산1 13- 8	도	131	13		하동군	국			
182	하동	화개	탐	588 -6	도	320	26		하동군	국			
183	하동	화개	탐	586 -2	답	316	87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57	이효숙			
184	하동	화개	탐	588 -5	도	23	23		화개면 용강리 475	김용문			
185	하동	화개	탐	588 -2	도	592	452		국토교통부	국			
186	하동	화개	탐	588 -1	전	259	16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475	김동곤			
187	하동	화개	탐	588 -4	도	194	194		화개면 용강리 475	김용문			
188	하동	화개	탐	586 -1	도	22	13		하동군	국			
189	하동	화개	탐	산1 13- 4	도	298	215		삼신리	김정두			등기부등본없음
190	하동	화개	탐	산1 13- 5	임	198	141		진주시 상대동 310-43	조영수			

191	하동	화개	탐	589 -2	도	136	53		국토교통부	국			
192	하동	화개	탐	589 -1	도	99	53		하동군	국			

국 공 유 지 기 본 조 사 서

화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단위 : m²

소유권	국유지		보 상 비		
지목	필지	포락	필지	비포락	비고
계			97	47,161	
답			32	6,361	
전			2	21	
대			1	695	
임			1	54	
잡			1	116	
천			16	30,580	
구			10	1,813	
도			28	5,201	
창					
제			3	908	
장					
유					
과					
철					
학					
차			3	1,412	

국공유지 토지조서

화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공유지 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	리			현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하동	화개	탑	863-1	구	2495	470		국토교통부	국			
3	하동	화개	탑	633	답	119	119		경상남도	국			
5	하동	화개	탑	632-1	답	709	709		하동군	국			
6	하동	화개	탑	632	답	802	664		하동군	국			
7	하동	화개	탑	631	차	1903	618		하동군	국			
8	하동	화개	탑	631-1	답	553	553		하동군	국			
9	하동	화개	탑	630	차	2169	134		하동군	국			
10	하동	화개	탑	628	차	1406	660		하동군	국			
11	하동	화개	탑	628-1	답	706	706		하동군	국			
12	하동	화개	탑	867	도	2469	45		국토교통부	국			
13	하동	화개	탑	582	답	678	93		하동군	국			
14	하동	화개	탑	582-1	답	287	287		하동군	국			
15	하동	화개	탑	581-1	답	524	107		하동군	국			
16	하동	화개	탑	581-3	답	220	220		하동군	국			
17	하동	화개	탑	577-5	답	1688	500		하동군	국			
18	하동	화개	탑	577-2	제	584	584		하동군	국			
19	하동	화개	탑	577-4	답	1458	185		하동군	국			
20	하동	화개	탑	578	답	196	144		하동군	국			
21	하동	화개	탑	578-1	제	211	211		하동군	국			
22	하동	화개	탑	577-3	답	330	70		하동군	국			
23	하동	화개	탑	577-1	제	113	113		하동군	국			
24	하동	화개	탑	577	답	660	107		하동군	국			
25	하동	화개	탑	851	천	19004 3	8449		국토교통부	국			
26	하동	화개	탑	573	답	1574	18		하동군	국			
27	하동	화개	탑	572	답	998	243		하동군	국			
28	하동	화개	탑	572-1	답	506	340		하동군	국			
29	하동	화개	탑	552	답	1501	18		하동군	국			
30	하동	화개	탑	571-8	임	316	54		하동군	국			
31	하동	화개	탑	571-6	답	50	2		경상남도	국			
32	하동	화개	탑	863	잡	1365	116		하동군	국			
33	하동	화개	삼신	705-1	답	836	5		경상남도	국			

34	하동	화개	삼신	990	구	24033	500		국토교통부	국			
35	하동	화개	삼신	702-1	답	370	363		경상남도	국			
37	하동	화개	삼신	701	답	119	119		경상남도	국			
38	하동	화개	삼신	700-4	답	20	20		경상남도	국			
40	하동	화개	삼신	700-3	답	44	44		경상남도	국			
45	하동	화개	삼신	994	도	1851	1756		국토교통부	국			
50	하동	화개	삼신	682	구	99	99		국토교통부	국			
53	하동	화개	삼신	1005	천	16299 8	3235		국토교통부	국			
57	하동	화개	삼신	528-1	답	364	11		하동군	국			
58	하동	화개	삼신	992	도	2383	9		국토교통부	국			
59	하동	화개	정금	1384	구	1489	73		국토교통부	국			
60	하동	화개	정금	1374	천	96446	1530		국토교통부	국			
67	하동	화개	정금	1385	구	327	116		국토교통부	국			
69	하동	화개	정금	970-5	답	246	26		경상남도	국			
70	하동	화개	정금	973	천	327	7		경상남도	국			
71	하동	화개	정금	1040- 1	답	131	85		하동군	국			
72	하동	화개	정금	1350	천	21068	10		국토교통부	국			
73	하동	화개	정금	1040	답	147	139		하동군	국			
74	하동	화개	정금	1041	답	119	43		하동군	국			
75	하동	화개	정금	1098	답	869	373		하동군	국			
78	하동	화개	정금	1379	구	2621	79		국토교통부	국			
82	하동	화개	정금	1374	천	96446	4889		국토교통부	국			
85	하동	화개	정금	1101- 1	답	12	12		하동군	국			
87	하동	화개	정금	1107- 6	천	51	51		경상남도	국			
92	하동	화개	정금	1107- 5	천	52	52		경상남도	국			
93	하동	화개	정금	1381	도	340	304		국토교통부	국			
94	하동	화개	정금	1188- 2	답	36	36		경상남도	국			
98	하동	화개	삼신	976	도	896	35		국토교통부	국			
99	하동	화개	삼신	1005	천	16299 8	978		국토교통부	국			
101	하동	호개	정금	1363	구	1831	2		국토교통부	국			
105	하동	화개	삼신	1005	천	16299 8	6848		국토교통부	국			
108	하동	화개	삼신	966	도	757	230		국토교통부	국			
110	하동	화개	삼신	57-1	천	14	14		경상남도	국			
112	하동	화개	운수	897	천	10551 4	1418		국토교통부	국			
116	하동	화개	운수	664	대	16949	695		하동군	국			

117	하동	화개	운수	655	천	2159	26		하동군	국			
118	하동	화개	운수	897	천	10551 4	37		국토교통부	국			
121	하동	화개	용강	1325	천	17842 3	2239		국토교통부	국			
132	하동	화개	용강	209-1	도	116	116		경상남도	국			
133	하동	화개	용강	209-3	도	6	6		국토교통부	국			
136	하동	화개	용강	1342	도	767	534		건설부	국			
138	하동	화개	용강	1340	구	1117	220		국토교통부	국			
139	하동	화개	용강	202-2	도	433	297		경상남도	국			
150	하동	화개	용강	1341	구	1488	104		국토교통부	국			
153	하동	화개	운수	688-1	도	201	10		하동군	국			
154	하동	화개	운수	687-1	도	474	436		하동군	국			
155	하동	화개	운수	876	천	8165	2		국토교통부	국			
157	하동	화개	운수	897	천	10551 4	337		국토교통부	국			
159	하동	화개	범왕	1897	천	68185	479		국토교통부	국			
165	하동	화개	탐	626-3	도	10	1		국토교통부	국			
166	하동	화개	탐	616-2	도	403	123		국토교통부	국			
167	하동	화개	탐	626-2	도	7	7		국토교통부	국			
168	하동	화개	탐	625-3	도	888	72		하동군	국			
169	하동	화개	탐	868	구	2083	150		국토교통부	국			
171	하동	화개	탐	산116 -3	도	427	113		하동군	국			
173	하동	화개	탐	587-4	도	10	3		국토교통부	국			
174	하동	화개	탐	산115 -3	도	329	89		하동군	국			
176	하동	화개	탐	산113 -9	도	131	28		하동군	국			
178	하동	화개	탐	587-2	도	450	312		국토교통부	국			
179	하동	화개	탐	587-5	도	140	65		하동군	국			
181	하동	화개	탐	산113 -8	도	131	13		하동군	국			
182	하동	화개	탐	588-6	도	320	26		하동군	국			
185	하동	화개	탐	588-2	도	592	452		국토교통부	국			
188	하동	화개	탐	586-1	도	22	13		하동군	국			
191	하동	화개	탐	589-2	도	136	53		국토교통부	국			
192	하동	화개	탐	589-1	도	99	53		하동군	국			

사 유 지 기 본 조 사 서

사 유 지 보 상 비 집 계 표

화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단위 : m²

소유권	사유지				보 상 비	
지목	필지	포락	필지	비포락	보상비	비고
계			95	14,654		단위절사
답			51	10,214		
전			4	586		
대			11	1,002		
임			4	605		
잡			1	82		
천			6	1,013		
구						
도			16	1,081		
창						
제						
장			1	9		
유						
과						
철						
학						
차			1	62		

사유지 토지조사서

화개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	리			현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	하동	화개	탐	634-1	대	410	2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탐리 634-1	정종길		근저당권자(화개농업협동 조합)	
4	하동	화개	탐	634-10	대	330	1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7	문희선		근저당권자(구례농업협동 조합)	
36	하동	화개	삼신	702	답	1174	77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법하길 16	임미순			
39	하동	화개	삼신	700-2	답	1355	41		627	최장례			
41	하동	화개	삼신	700-1	답	1272	99		890	박종욱		근저당권자(농어촌진흥공 사)	
42	하동	화개	삼신	689	답	1874	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서동길 5-12	김수길			
43	하동	화개	삼신	688	답	2063	51		890	박종욱		근저당권자(농어촌진흥공 사)	
44	하동	화개	삼신	687	답	1626	156		화개면 삼신리 890	박종욱			
46	하동	화개	삼신	685	답	3372	650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207번길 14-3 (상대동)	김지애			
47	하동	화개	삼신	684	답	688	120		탐리 106	이강길			
48	하동	화개	삼신	683	답	1633	741		탐리 357-5	이강길			
49	하동	화개	삼신	681	답	4248	401		탐리 108	주기형			
51	하동	화개	삼신	680-2	답	3653	550		탐리 708	유재우			
52	하동	화개	삼신	680-1	대	549	516		탐리 708	유재우			
54	하동	화개	삼신	676	답	916	214		620	주명돈			
55	하동	화개	삼신	675	대	149	149		탐리 232	유재영			
56	하동	화개	삼신	528	답	1081	102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319	이종팔			
61	하동	화개	정금	954	답	60	35		258-1	이갑수			

62	하동	화개	정금	955	답	264	215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46 후곡마을 206동 906호	최석산			
63	하동	화개	정금	956	답	1808	238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46 후곡마을 206동 906호	최석산			
64	하동	화개	정금	957	답	357	1		삼신리 258-1	노승자			
65	하동	화개	정금	971	답	902	71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길 9-2	이갑수			
66	하동	화개	정금	970	답	926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367번길 37, 7동 202호(하단동, 대진연립)	문옥진			
68	하동	화개	정금	970-3	답	691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367번길 37, 7동 202호(하단동, 대진연립)	문옥진			
76	하동	화개	정금	1099	답	517	494		1167	정순금			
77	하동	화개	정금	1099-1	답	22	22		1167	정순금			
79	하동	화개	정금	1100-2	답	208	208		삼신리 282	이상기			
80	하동	화개	정금	1100-1	답	364	364		삼신리 282	이상기			
81	하동	화개	정금	1101	답	1608	1082		삼신리 282	이상기			
83	하동	화개	정금	1102	답	1226	4		1167	정순금			
84	하동	화개	정금	1103	답	615	29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564 태원아파트 107동 1808호	유경석			
86	하동	화개	정금	1105	답	1161	9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35-13, 201동 1003호 (당감동, 태화현대아파트)	이승민		근저당권자(화개농업협동조합)	
88	하동	화개	정금	1107-4	천	665	421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1168	이선자			
89	하동	화개	정금	1106-1	천	20	20			김동윤			등기

									화개면 운수리 351		개농업협동조합)	
107	하동	화개	삼신	60-6	전	1079	30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987-1	오형두	근저당권자, 지상권자(하 동농업협동조합)	
109	하동	화개	삼신	60-1	전	990	58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451 사천푸르지오 109-604	오정두		
111	하동	화개	삼신	57	전	171	65		5	박희연		
113	하동	화개	삼신	54-1	답	1227	248		용강리 446	이종만	근저당권자, 지상권자(화 개농업협동조합)	
114	하동	화개	삼신	55-6	대	380	6		용강리 458-4	양해진		
115	하동	화개	삼신	55-3	대	1120	2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길 31	양해진		
119	하동	화개	용강	산9 3-1	도	50	31		화개면 운수리 208	대한불 교조계 종쌍계사		
120	하동	화개	용강	산9 3-2	임	3273	342		화개면 운수리 208	대한불 교조계 종쌍계사		
122	하동	화개	용강	산9 0	임	1884	44		전남 구례군 구례읍 토지서리	임정규		등기부등본없음
123	하동	화개	용강	211 -2	도	179	179		전남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510	김종필		
124	하동	화개	용강	211 -4	답	69	69		군포시 당동 782-11 덕은빌라 에이-302	김종식		
125	하동	화개	용강	211 -3	도	102	102		450	이면구		
126	하동	화개	용강	202 -1	답	425	14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로 2-15	배재현 외 2인	근저당권자(하동신용협동 조합)	
127	하동	화개	용강	209 -2	답	103	103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649-9 진군아파트 7동 502호	배재영		
128	하동	화개	용강	210 -1	천	26	26		전남 여수군 두남면	박성협		등기

									대표리				부등본없음
129	하동	화개	용강	210-2	도	73	73		전남 여수군 두남면 대표리	박성협			등기부등본없음
130	하동	화개	용강	208-2	도	86	86		운수리 289	김용팔			
131	하동	화개	용강	208-1	답	170	170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649-9 진군아파트 7동 502호	배재영			
134	하동	화개	용강	207-2	도	30	30		251	이성조			
135	하동	화개	용강	207-1	답	393	314		화개면 용강리 217	김상석 외 2인			
137	하동	화개	용강	202-3	답	23	2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471-6	배재근			
140	하동	화개	용강	206	답	466	32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481-16	최윤철		근저당권자(화개농업협동 조합)	
141	하동	화개	용강	205	답	426	21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685-2	정춘애			
142	하동	화개	용강	204	천	145	74		양산군 기장면 대라리 312	박병규			
143	하동	화개	용강	203	답	1203	549		진주시 망경동 439-15 이화아파트 나동 603호	배현주 외 1인			
144	하동	화개	용강	200	답	919	40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15	배재현		근저당권자. 지상권자(하 동신용협동조 합)	
145	하동	화개	용강	200-1	답	179	8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15	배재현			
146	하동	화개	용강	199	답	387	251		진주시 상봉동 1102-1 현대로얄맨션 109호	배중현			
147	하	화	용	198	천	469	436		312-1	최성자			

	동	개	강							외 1인			
148	하동	화개	용강	201-1	답	679	119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211동 1202호 (중동,성호아 파트)	강종인			
149	하동	화개	용강	197	답	89	7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271	정춘순			
151	하동	화개	용강	196-1	답	1479	28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79-11	이종기			
152	하동	화개	운수	688	답	1002	1		166	김갑덕			
156	하동	화개	운수	687	대	1106	121		456	김태곤			
158	하동	화개	운수	687-2	차	364	6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456	김종인			
160	하동	화개	범왕	105-1	장	322	9		경상남도 거제시 삼거4길 22 (삼거동)	손경식		근저당권자(화개농업협동 조합)	
161	하동	화개	범왕	105-2	대	922	2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946-18	정연우		근저당권자, 지상권자(동 광양농업협동 조합)	
162	하동	화개	범왕	105-3	답	305	1		전라남도 광양시 폭포사랑길 96, 18동201호(금호동,장미 아파트)	정신화		근저당권자, 지상권자(동 광양농업협동 조합)	
163	하동	화개	범왕	103-5	답	640	3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5길 43-7, 105동 1402호(동산 동, 골드클래스)	정영훈 외 1인		근저당권자(화개농업협동 조합)	
164	하동	화개	범왕	102-3	잡	725	8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5길 43-7, 105동 1402호(동산 동, 골드클래스)	정영훈 외 1인		근저당권자(화개농업협동 조합)	
170	하동	화개	탑	616-1	도	10	8		서울 강서구 화곡동 430-19	강대현			
172	하동	화개	탑	산1 16-2	도	99	29			정찬민			등기부등

																		보 없 었 음
175	하 동	화 개	탐	산1 15- 1	임	99	78			최 한 기								등 기 부 등 본 없 었 음
177	하 동	화 개	탐	산1 13- 7	도	99	21		삼 신 리	김 정 두								등 기 부 등 본 없 었 음
180	하 동	화 개	탐	산1 13- 6	도	99	75		삼 신 리	김 정 두								등 기 부 등 본 없 었 음
183	하 동	화 개	탐	586 -2	답	316	87		경 상 남 도 하 동 군 화 개 면 쌍 계 로 557	이 효 숙								
184	하 동	화 개	탐	588 -5	도	23	23		화 개 면 용 강 리 475	김 용 문								
186	하 동	화 개	탐	588 -1	전	259	160		경 상 남 도 하 동 군 화 개 면 용 강 리 475	김 동 곤								
187	하 동	화 개	탐	588 -4	도	194	194		화 개 면 용 강 리 475	김 용 문								
189	하 동	화 개	탐	산1 13- 4	도	298	215		삼 신 리	김 정 두								등 기 부 등 본 없 었 음
190	하 동	화 개	탐	산1 13- 5	임	198	141		진 주 시 상 대 동 310-43	조 영 수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799호

제4회 지방일반임기제(수목보호전문가 7급상당) 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하동군 공고 제2019-550호(2019.5.9.), 제2019-610호(2019.5.22.), 제2019-610호(2019.6.25.)에 의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서류전형 합격자

임용예정 부서	분 야	채용등급	선발예정 인원	서류전형 합격자
산림녹지과	수목보호전문가	지방녹지주사보 일반임기제 (7급 상당)	1	2019-5-1 이○규
				2019-5-2 최○원
				2019-5-3 김○재

2. 면접 일정 및 장소

채용분야	면접 시험				비고
	일 자	등록시간	면접시간	장 소	
일반임기제(7급상당)	2019. 7. 12.(금)	14:30	15:00 ~ 16:00	하동군청 상설회의장	(본관 2층)

※ 면접시간은 유동적임.

3. 면접 방법 : 개별 면접

4.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19. 7. 15.(월) 예정
- 발표공고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hadong.go.kr>)

5. 응시자 주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 대상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등록시간까지 등록장소에 도착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채용분야의 면접시간 종료시까지 도착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됩니다.
-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면접일자 3일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사항은 하동군 행정과(☎055-880-2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면접장소 위치

- 등 록 장 소 : 하동군청 행정과(본관 2층)
- 면접시험장 : 하동군청 상설회의장(본관 2층)
- 주 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 공고 제2019 - 808호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기 지원사업(2차) 신청 공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주요배출원인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을 유도하고 처리비용절감을 위해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기 구입지원」을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10.

하 동 군 수

지원계획

- 대 상 :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 지원규모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기 지원 (렌탈)
- 지원기준 : 처리기기 연간렌탈비용의 50% 지원
- 대상자 결정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하동군청(환경보호과)
- 신청기간 : 2019. 7. 23까지(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기 지원 보조사업 신청서(별지1호서식)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필증 1부

□ 지원기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사업장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우선순위
 - ① 1순위 : 공공기관(학교)
 - ② 2순위 : 일반음식점 중 연간처리량 다량우선
 - ③ 3순위 : 사업장면적(m²), 집단급식인원수(집단급식소에 한함)

[음식물처리기기 지원기준]

- 처리방식 : 생물분해 완전소멸방식 처리기(처리용량 100kg/일 이내)
- 지원기준

지 원 방 식		구매(렌탈)단가(천원/대)			지원한도	비고
		계	군비	자부담		
기기 렌탈 (1년 계약기준)	50kg/일	2,880	1,440	1,440	자부담 50% (연간 임대료)	
	100kg/일	4,800	2,400	2,400		

※ 신청사업자 현황에 따라 조정가능

□ 유의사항

- 본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신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문의사항 및 의문사항은 하동군청 환경보호과로 (055-880-2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서식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 지원 사업』 보 조 사 업 신 청 서

1. 신청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팩 스	

2. 음식물폐기물 처리현황 (다량배출사업장 기 신고현황)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점: 사업장 면적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객실 수	명					
		㎡					
		㎡					
		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처리실적							
자가처리			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간 처리량 (kg/년)	부산물 발생량 (kg/년)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년)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년)	위탁계약 비용 (원/kg)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전화

3. 음식물처리기기 신청

연번	제 품 정 보	사업량	금 액	방식 (구입 또는 렌탈)
	모 델 명(제 조 사)			
1				

상기와 같이 『음식물처리기기 지원 사업』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 .

신청업체명 : (직인)

※ 반드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장 신고필증 첨부

하동군수 귀하

신조 및 폐기 공인 공고

하 동 군 수

1. 공인 등록

- 신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신조
- 신조 공인 사용 개시일자 : 2019. 07. 01.
- 신조 공인내역

구분	공 인 명	규격	인영	비고
신조	하동군기획예산과 분임재무관인	2.0cm × 2.0cm 정방형		
신조	하동군기획예산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 1.8cm 정방형		
신조	하동군특화산업과 분임재무관인	2.0cm × 2.0cm 정방형		
신조	하동군특화산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 1.8cm 정방형		

2. 폐기 공인 등록

- 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폐기
- 폐기 공인 사용 종료일자 : 2019. 06. 30.
- 신조 공인내역

구분	공 인 명	규격	인영	비고
폐기 공인	하동군 기획예산담당관 분임재무관인	2.0cm × 2.0cm 정방형		
폐기 공인	하동군 기획예산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 1.8cm 정방형	